「경북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

나. 제안이유

○ 경북연구원은 국가 및 경상북도 발전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북도 內 시·군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구미시는 경북연구원에 순자산 및 운영비 출연을 통한 지역 맞춤형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 개요

ㅇ 출연기관 : 경북연구원(설립일 : '90. 12월)

• 운영근거 :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조　　직 : 연구본부(5연구실, 3추진단), 사무처(사업지원본부, 기획경영실)

• 인　　력 : 정원 85명/ 현원 55명(원장1, 연구직 39, 관리직 10, 전문직 5)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1

ㅇ 출연금액 : 2.2억원(순자산 1.2, 운영비 1)

• 연도별 출연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비고
합 계	2.2	2.5	2.5	2.5	2.5	
순자산 출연	1.2	1.5	1.5	1.5	1.5	7.2 분납(5년)
운영비 출연	1	1	1	1	1	1/매년

※ '30년부터는 운영비 출연만 존재(1억 원/年)

ㅇ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 출연 내용

○ 순자산 출연 : 시·군 현황 및 정책수요에 근거하여 차등 배정(분납 가능)

• 금액 : 시·군별 순자산 출연액 배정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시·군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칠곡	문경 의성 영덕 예천 울진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릉
출연액	각 7.2억원	각 6.2억원	각 5억원	각 4억원

※ 객관적 상황(재정자주도, 예산, 인구) 및 주관적 상황(수행과제건수, 과제수행인력, 정책수요예측) 고려

• 사용 : 시·군 연구인력 대응, 시설·설비투자 비용

• 지원 : 출연 단체장 당연직 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연간 사업계획 등) 참여, 시·군 직원 연구관으로 파견하여 현장 의견 반영된 시책개발 수행

○ 운영비 출연 : 연구과제 수행 비용에 근거하여 동등 배정

• 금액 : 시·군 구분없이 1억 원/年

• 사용 :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연구원 1년 운영비 (경북연구원 기본과제 및 정책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 지원 : 연간 정책연구과제 1억 원 한도 내 현안 정책연구과제 우선 수행

❍ 출연의 필요성

○ 경북연구원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정책과 정합성을 갖춘 시책을 적시에 도입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경북도의 정책연구지원으로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출연안은

- 경북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경북연구원은 경북도 및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1990년 12월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경제·사회·복지·문화 등의 각종 부문에 대해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국비 확보에 기여하는 등 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에서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도와 도내 시·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출연안은 사업내용과 근거 및 필요성, 예산과 산출근거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가 각종 정책연구,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경북연구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구미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결과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